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1. 9(화) / 총 5매(본문2)
담당 부서	침단도로안전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연진, 사무관 김강문 • ☎ (044) 201-3924, 3931
	한국도로공사 연구기획실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장 조성민 • ☎ (031) 8098-6140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8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·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 교차로·방호울타리·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안전기준 개정안 발효 예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이강래)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(Asian Highway)*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UN의 새로운 국제규정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.

* 아시안하이웨이: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이 연결되는 국제간선도로망

○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AH1(경부고속도로), AH6(국도7호선·동해고속도로) 노선을 지나는 주요 8개국* 및 UN기구와 협력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으며, 이를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(UNESCAP)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제출(17. 9. 25.)하였고,

* 중국, 러시아, 터키, 태국, 인도, 방글라데시, 북한(부분 참여), 일본(정부차원 불참)

○ UNESCAP 본부(태국 방콕)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정부 대표들과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'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'을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(17. 12. 15.)되었다.

□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하여 2005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이 참여하여 국제협정문에 서약한 후,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,

-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4,630km 길이의 국제 간선 도로망으로서 AH1 ~ 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. 우리나라는 AH1,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.
-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‘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’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으나,
 - * 전 세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8%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교차로, 방호울타리, 표지판 등 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아 사고 예방이 어려움
- 방호울타리,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채택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,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.
- 이번 개정안은 UN 사무총장에게 보내진 후 국제법에 따라 아시안 하이웨이 회원국들에게 12개월 동안 회람을 거친 후 2/3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발효된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” 라고 말했다.
-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안은 도로안전시설기준이 잘 마련된 선진국은 물론 기준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화 하였다”고 설명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도로안전과 김강문 사무관(☎ 044-201-3924), 한국도로공사 연구기획실 조성민 실장(☎ 031-8098-61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회의 사진



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정부 실무그룹회의 전경(2017.12.13.-15.)



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 규정 제정의 주역들 (좌측부터 국토부 박선용 사무관,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실장, 국토부 이상현 과장, UNESCAP 샤프띠에 과장, 아메드 담당관)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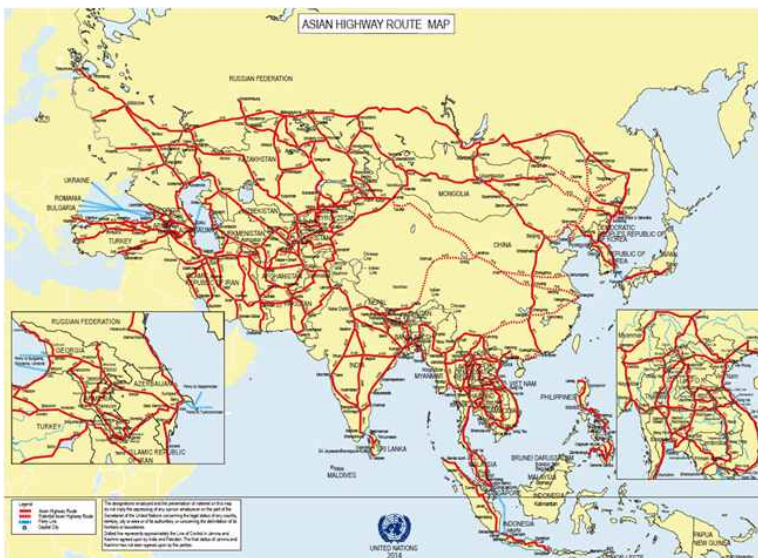
아시안하이웨이(AH) 및 국제협정 개요

1) 아시안하이웨이(Asian Highway)는 아시아 32개국을 지나 유럽과 연결되는 145,302 km의 국제도로망으로서, 8개 간선(AH1~8)과 58개 지선 노선으로 구성됨. 유엔이 관리하는 다자조약 형태의 정부 간 국제협정(30개국 가입)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.

* 우리나라와 북한은 AH 국제협정 당사국으로서, 한반도 노선을 지정하고 관리

아시안 하이웨이 국제협정 현황

- 명 칭 :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 간 협정
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Asian Highway Network
- 유 형 : 다자조약(외교부 조약1739호·유엔No.41607) ← 2005.7.4. 발효
- 당사국 : 아시아 30개 국가 (우리나라2004가입, 북한2012가입 포함)
※ AH 노선을 보유한 32개국 중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를 미가입 상태
- 구 성 : 본문(19개조) 및 부속서 I[노선지정]/II[설계기준]/III[노선표지]
- 기탁자 : 유엔 사무총장
- 사무국 :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(UNESCAP)**
** 아시아,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범정부기구
(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n and the Pacifi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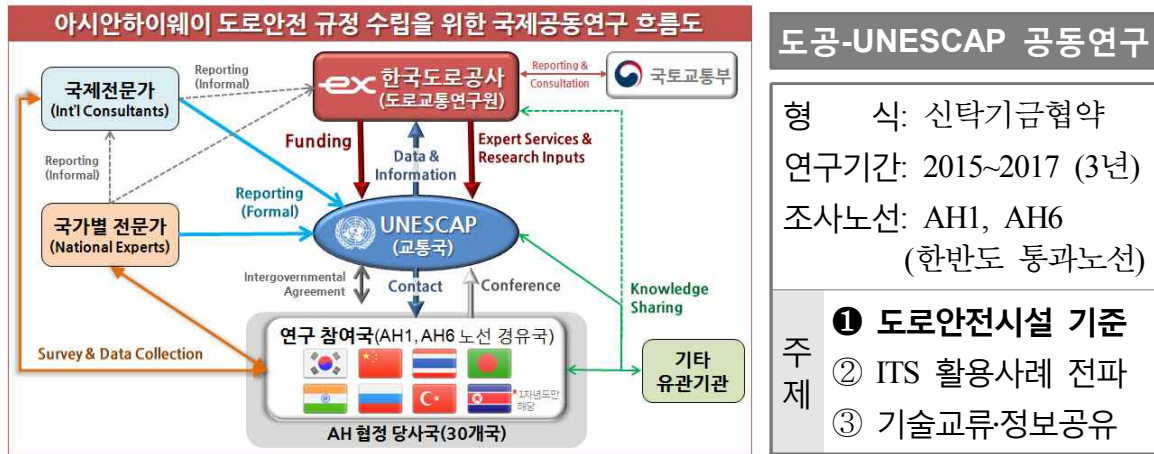


2) 한반도 구간은 2개 간선(AH1경부고속도로등, AH6국도7호선·동해고속도로등)과 1개 지선(AH32함경북도)이 지나며, 총길이는 2,382 km.

AH1 일본 → 부산~경부고속도로~서울~국도1호선 → 개성~평양~신의주 → 중국
→ 동남아 → 인도 → 이란 → 터키 [14개국 20,557km]

AH6 부산~국도7호선~동해고속도로~국도7호선~고성 → 원산~청진~라선 → 중국
→ 카자흐스탄 → 러시아 [5개국 10,533km]

3)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2015년부터 ‘아시안하이웨이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공동연구프로그램’을 UNESCAP 및 주요 당사국들과 함께 추진



4) 금번에 우리 정부 주도로 ‘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 설계기준(Asian Highway Design Standards for Road Safety)’인 의무규정 신설

* 도로의 구조, 교차로, 중앙분리대 등 방호시설, 보행자 보호, 표지판, 터널 등 8개 분야의 45가지 안전요소들을 다루고 있음

현행	개정안								
▶ 설계기준 규정인 ‘부속서II’에서 한 문장(제10항)으로 언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존 부속서II의 추가편(II-bis)을 신규 제정 → 부속서 II-bis : AH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 ② 본문에 ‘부속서II-bis’ 관련 조항(문구) 추가 ③ ‘부속서II-bis’의 참조용 부록인 가이드라인 첨부 								
규정 항목 (8종45요소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① 도로망 설계</td> <td>② 도로기하구조</td> <td>③ 교차로시설</td> <td>④ 노변방호시설</td> </tr> <tr> <td>⑤ 보행자·저속차</td> <td>⑥ 시선유도시설</td> <td>⑦ 도로표지판</td> <td>⑧ 터널시설</td> </tr> </table>	① 도로망 설계	② 도로기하구조	③ 교차로시설	④ 노변방호시설	⑤ 보행자·저속차	⑥ 시선유도시설	⑦ 도로표지판	⑧ 터널시설
① 도로망 설계	② 도로기하구조	③ 교차로시설	④ 노변방호시설						
⑤ 보행자·저속차	⑥ 시선유도시설	⑦ 도로표지판	⑧ 터널시설						

5)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 개정 절차

- ① 당사국의 제안서 제출 (→UNESCAP사무국)
- ② (사무국) 실무그룹회의 45일 전까지 모든 당사국에 개정안 배포
- ③ **(당사국 실무그룹회의) 참석 회원국 2/3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**
- ④ (사무국) 채택된 개정안을 UN 사무총장에 송부
- ⑤ (UN사무총장) 모든 당사국이 수락하도록 개정안 배포
- ⑥ 당사국 2/3 이상이 수락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때 발효(수락거부를 선언하지 않은 당사국은 즉시 발효)